

2008 지방세심사의 운영방향

김 외 석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팀장

1. 들어가는 말

지난 2007년도는 지방세심사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여러모로 중요한 한 해였다. 그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조직 내에서 나름의 평가를 받지 못하고 폐지와 신설을 반복하였던 지방세심사업무의 전담조직인 지방세심사팀이 지방세제관과 함께 2007.1.29. 부활 · 신설되었다.

지난 1962.1.1 지방세심사청구제도의 도입 이래 지방세 구제업무 전담조직은 존 · 폐를 반복함으로써 준사법적 업무의 위상이 약화되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역행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그간 지방세구제제도에 관한 지방세법령 등의 개정이나 폐지 없이 담당조직만 폐지와 신설을 반복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저해하고 구제업무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다.

최근 납세자의 권리의식 증가 등으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만이 표출하고, 급격한 부동산 세제개편과 시가표준액 인상 등에 따른 불복청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부에서는 지방세 심사청구시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가 가능하였던 필요적 이의신청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선택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납세자의 편

의성을 제고하고, 심의예정일 사전예고제 도입, 구술심리의 기회제공 등을 통한 구제제도의 서비스 확대, 심사청구결정사례의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앞장서 왔다.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재정부의 국세심판원과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합하고, 심판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을 신설해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심판원 설립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지방세 관련 불복에 대한 구제기능이 국세심판원과 합쳐져 조세심판원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 구제업무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에도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구제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세구제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심사업무의 처리, 다양한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구제서비스의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구제업무 담당인력의 확충 및 전문화를 통해 고객만족의 구제서비스 체계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II. 그간의 구제업무의 정책성과

1. 선택적 2심제 도입('06.1.1)

2006.1.1. 지방세법 제74조를 개정하여 그 동안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치도록 한 것을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곧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2심제를 도입하였다. 필요적 이의신청을 임의적 선택청구로 변경함으로써 2006년도 우리부 심사청구 1,156건 중 71.28%에 해당하는 824건이, 2007년도에는 795건 중 41.51%에 달하는 330건이 이의신청 없이 곧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2. 납세자보호관제 도입('06.1.1)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사전적으로는 부과처분을 받기 전에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법적 쟁송에까지 가지 아니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세무행정의 민주화를 지향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충실화를 기하기 위해 개혁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부에서도 2005.12.31. 지방세법 제71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자를 위한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불합리한 지방세관련 제도개선 의견 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하였다.

납세자보호관은 징정, 호소 등 세금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세무 상담 및 납세자권리현장에 관한 사항, 지방세행정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권 남용, 중복조사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세무조사중지명령권』, 지방세법을 잘못 적용하였거나 사실관계의 판단착오 등으로 부당한 과세가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을 시정 · 중지시킬 수 있는 『과세처분 시정 · 중지명령권』, 위법 · 부당한 처분임인 것임을 확인하였을 때 즉시 그 처분을 취소 · 변경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시정(촉구)요구권』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심의기일 사전예고제 시행('07.7.1)

지방세 구제제도란 시 · 군 · 구로부터 위법 · 부당한 지방세 부과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납세자로 하여금 지방세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제도로서 헌법이 조세관계의 재산권 침해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고 조세행정의 민주화와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장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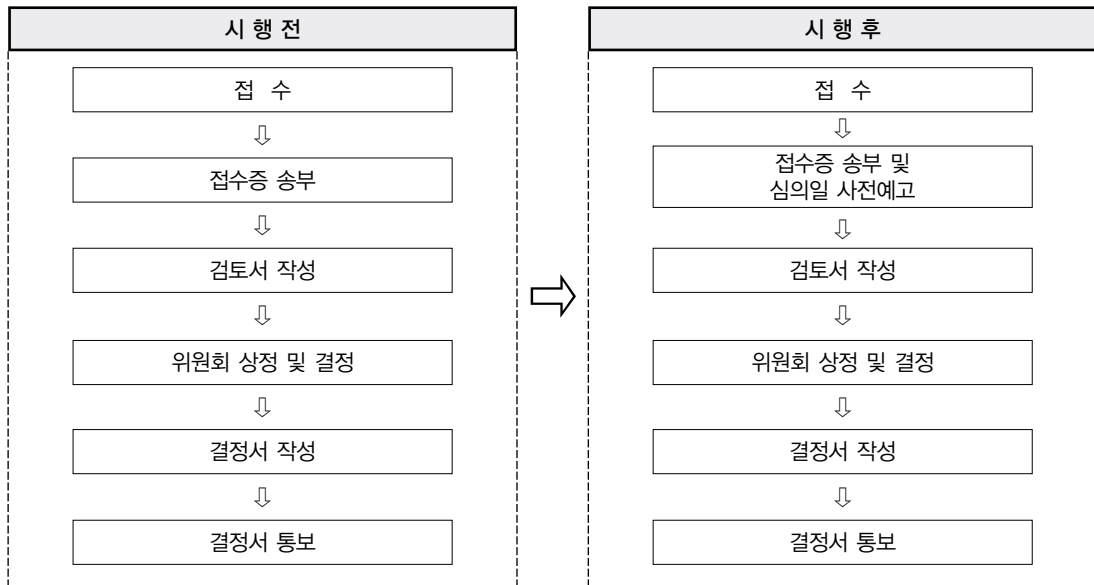
조세행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하여 침해적 성격의 업무를 집행하는 작용이므로 일반적인 행정관계보다 보다 더 엄격한 법의구속을 요구하고 이러한 조세부과는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조세불복사건도 매년 반복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다수의 납세자로 인하여 다른 행정쟁송사건에 비해 그 수가 방대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지방세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지방세를 부과하기 전의 과세전적부심사와 부과처분이 있는 후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법적 구제제도는 행정소송과 민법상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나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이 있다.

이 중 지방세 구제제도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는 행정부의 최종심이기 때문에 그간 심의의결기관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과정에 과세권자와 납세자가 함께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 구술심리제 도입 등 사법 절차성을 강화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증진 방안을 개선하여 왔지만, 보다 더 납세자의 편익을 위하여 새로운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였다.

지방세법 제77조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고 결정서를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심사청구를 신청한 청구

인은 법정처리기한인 90일 동안 처리과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연히 심의결과를 기다리거나 수시로 유선으로 처리상황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절실하였다.

〈표1〉 구제업무 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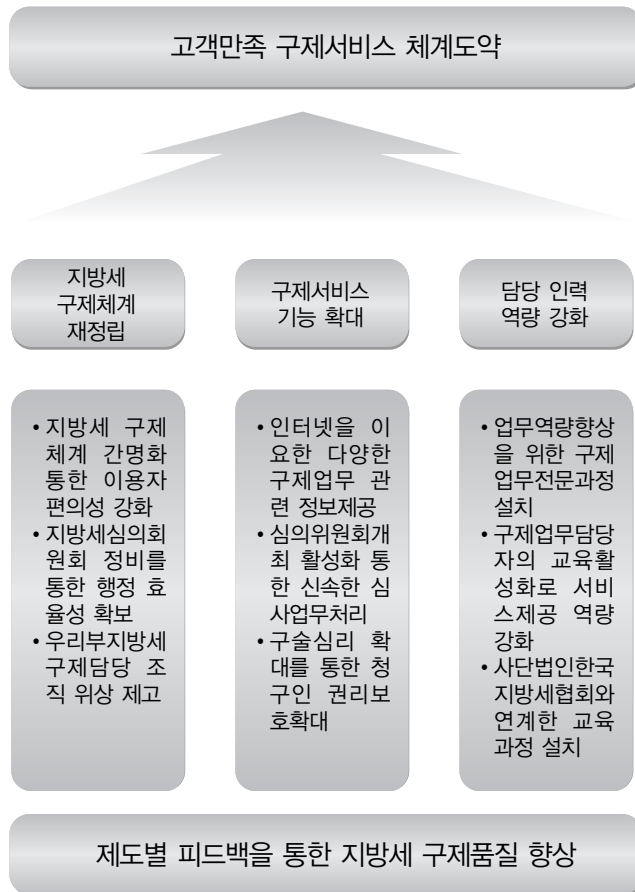
이에 우리부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매월 정례화 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세 심사청구 접수증 송부시(신청일로부터 2~3일 이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예정일을 미리 명기하여 통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전예고제를 2007.7.1.부터 시행하였고, 아울러 개최예정일 통보시 심사기간, 관계서류열람, 의견진술 및 소송안내 등 안내문을 함께 송부하여 청구인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하였으며 불가피하게 자료보정요구 및 추가검토필요 등의 사유로 당초 통보한 심의예정일이 변경될 경우 이러한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변경된 심의예정일 재통보 하는 보완장치도 마련하였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일에 맞추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심의과정에 참석하여 의견 등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권익보호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앞으로 제도시행의 여건이 갖추어진 자치단체에도 확대·시행하여 납세자들의 편의증진 및 권익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아갈 계획이다.

Ⅲ. 2008년도 지방세심사의 운영방향

2008년도 지방세심사 업무 운영의 정책방향은 크게 지방세 구제체계의 재정립, 구제서비스 기능 확대,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심사청구제도의 조정과 간명화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정비를 통한 효율성을 확보하여 지방세 구제체계를 재정립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구제업무 관련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개최 활성화를 통한 처리기한의 단축과 구술심리 확대 등을 통한 청구인의 권리보호 확대 등으로 구제서비스의 기능을 확대하고, 담당인력 역량 강화를 통해 고객 만족 구제서비스 체계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2〉 2008년도 지방세심사의 운영방향



1. 정책여건

가. 지방세심사청구 건수 폭증

최근 납세자의 권리의식 증가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만요인 표출 및 시가표준액 인상 등에 따른 재산세 불복사건 증가 등으로 지방세심사청구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연도별 불복청구와 그 처리결과를 보면 <표3>과 같다. <표3>에 의하면 2003년 282건에 불과하던 우리부 지방세심사청구 건수가 2004년에 402건, 2005년 556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1,156건으로 청구건수가 급상승하고 있다.

<표3> 연도별 지방세심사청구 처리 현황

구 분	'03	'04	'05	'06	'07
처리건수	282	402	556	1,156	795
증가율(%)	-	42.6	38.3	107.9	31.23

※ '07년도 : 각하 42건, 기각 677건, 취소 및 경정 76건

나. 직원 1인당 처리건수 과다

지방세 심사청구와 관련된 업무처리량을 살펴보면 <표4>와 같다. 2007년도를 기준으로 행정자치부에 청구된 지방세 심사는 795건이었으며, 이를 10명이 담당함으로써 직원 1인이 연평균 79.5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의 직원 1인당 심사청구 안건을 보면 연평균 80.9건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사기관인 국세심판원의 1인당 평균 처리건수인 48.6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원 1인당 업무량이 과다함으로 인하여 심도 있는 안건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는 곧 구제서비스 품질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표4〉 직원 1인당 심사청구 처리 현황

(단위 : 명, %)

구 분		'03	'04	'05	'06	'07	평균
지방세	인 력	5	9	7	8	10	7.8
	처리건수	56.4	44.7	79.4	144.5	79.5	80.9
국 세	인 력	105	105	105	105	105	105
	처리건수	39.7	35.9	49.6	50.2	50.2	45.12

2. 2008년도 지방세심사의 운영방향

가. 지방세구제제도 체계 개선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등 지방세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각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중앙과 지방의 구분이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방의 시·군의 경우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06년도 기준으로 청구건수가 없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시·군·구가 111개에 달하여 위원회의 존치가 유명무실하고, 행정력 낭비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구건수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서면심리를 위주로 심의를 함으로써 심의의 충실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지방세 부과징수권의 권한 위임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세목별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청구기관을 달리하고 있어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단계적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시·도의 과세전적부심사를 폐지하고 시·도 및 시·군·구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시·군·구에서 하도록 개정하고, 이의신청의 경우는 시·군·구의 이의신청을 폐지하여 시·도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세구제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표5〉 지방세구제체계 개선(안)

현 행	개 정
[과세전적부심사] • 시·군·구세 ⇒ 시·군·구 • 시·도세 ⇒ 시·도	[과세전적부심사] • 시·군·구·도세 ⇒ 시·군·구 ※ 시·도 과세전적부심사 폐지
[이의신청] • 시·군·구세 ⇒ 시·군·구 • 시·도세 ⇒ 시·도	[이의신청] • 시·군·구·도세 ⇒ 시·도 ※ 시·군·구 이의신청 폐지

나. 구제서비스의 기능 확대

그간 지방세 불복청구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기일 사전예고제 시행 및 청구절차 개선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지만, 구제서비스의 편의성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앞으로 심사청구 접수방법 개선 및 구술심리의 확대방안 모색,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확대 등 구제서비스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먼저, 기존에 직접 제출이나 등기우편 접수로 한정하였던 지방세심사청구 신청을 인터넷을 이용한 심사청구접수 시스템을 설치하여 접수창구를 확대하고, 접수과정 및 심의 진행과정 등을 시스템을 통해 예고·안내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구제의 일반원칙인 불고불고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지방세법 개정시 반영하여 납세자들에게 심의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컨퍼런스콜(전화구술) 등의 도입으로 구술심리의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현행 15인 이내의 심의위원을 20인 이상으로 증원 개편하여 소요인원을 추가 확보하여 인력 풀(pool)제를 운영함으로써 매월 1회의 위원회 개최 횟수를 점차 확대하여 나아갈 방침이다.

〈표6〉 구제서비스의 기능확대 방안

추진계획	주요 내용
정보화추진	• 심사결정검색사이트(lotex.mogaha.go.kr)를 Wetax로 단일화 • 인터넷을 이용한 심사청구접수 시스템을 설치하여 접수 창구확대 • 심의 등의 진행과정상황 및 처리일자 등을 인터넷을 통해 예고 및 안내
결정범위 명문화	•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지방세법에 반영
구술심리 확대방안 모색	• 컨퍼런스콜(전화구술)등의 도입검토 • 인터넷 이용 화상구술심리 도입방안 추가 연구 검토
위원회 개최 확대 검토	• 심의위원회 위원을 20인 이상으로 증원 개편 • 월 1회 개최 횟수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 검토

IV. 조세심판원 설치에 따른 지방세 구제제도의 변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현재 재정경제부 산하의 국세심판원을 우리부의 지방세심의 위원회와 통합해 총리실 산하에 조세심판원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 · 관세 및 지방세를 망라한 세금불복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금년 2월중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통과가 이루어지면 조세심판원 설립이 최종 확정되게 된다.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납세자 구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와 국세심판 기능을 합쳐 국세심판원이 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국세나 지방세는 과세주체가 다를 뿐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세채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조세심판원의 설립으로 권리구제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판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세심판원의 설치에 따라 지방세심사청구 업무를 국세심판 업무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심판업무의 특성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으며, 조세에 대한 원리는 서로 유사하므로 국세 · 지방세 심판업무를 일원화할 경우 전문성과 시너지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심판기능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행 국세심판원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심사 업무는 조직 및 인원규모, 처리건수 그리고 그 운영방식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당장 정부조직법상의 조세심판원 설치 근거(안) 마련 문제 및 지방세 심판청구의 필수적 전치주의 도입 문제, 그리고, 조세심판원 신설에 따라 지방세심판관 및 지방세심판관회의를 국세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지 여부와 현행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비상임심판관으로의 지위승계 여부

등에 관한 사안 등 해결해야할 선결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

1. 지방세심사팀과 국세심판원의 비교

가. 조직규모

- 지방세 : 1세제관, 1개팀, 지방세심의위원회(비상임 13인)
- 국세심판원 : 1원 1실 5심판관 (비상임심판관 12인)

나. 인력규모('08.1.현재)

구분	계	원장 (1급)	심판관 (2·3급)	행정실장 (3·4급)	조사관 (4급)	서기관 (4급)	사무관 (5급)	직원 (6~7급)	기능직
지방세	11	-	-	-	-	1	5	4	1
국 세	105	1	5	1	13	5	50	9	21

다. 처리건수 (단위:건)

구 분	'03	'04	'05	'06	'07
지방세	282	402	556	1,156	795
국 세	4,170	3,776	5,216	5,270	5,579

라. 현행 지방세심사청구 및 국세 심판청구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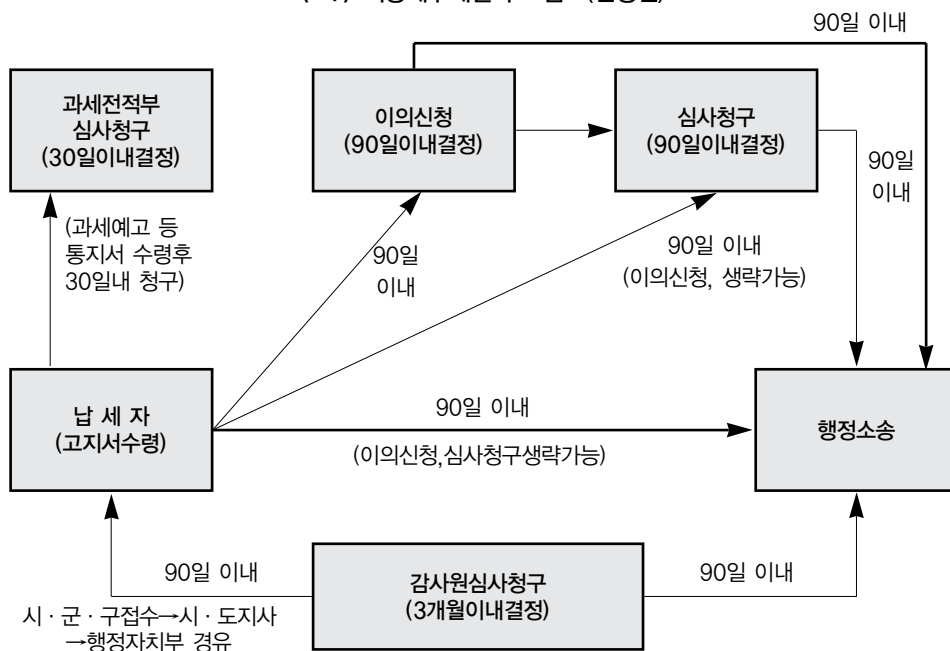
구 분		지방세(심사청구)	국 세(심판청구)
법적근거		지방세법 제72조 및 제74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재 결 청		행정자치부 광역자치단체(시 · 군 · 구세)	국세심판원
청구기간		1. 이의신청거친 경우 이의신청 통지 받은날부터 90일내 2. 그렇지 않으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내 예외적 14일연장 가능(75조)	1. 이의신청거친 경우 이의신청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내 2. 그렇지 않으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내
청구대상		지방세법에 따른 처분(72조) 단, 재결, 조세법통고처분, 감사원심사청구, 과세 전적부심사청구 제외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55조) 단, 재결, 조세법통고처분, 감사원심사청구, 과세 전적부심사청구 제외
심사방법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 행정자치부장관 결정(77조)	국세심판관회의(78조) (단, 소액사건 등의 경우 주심국세심판관 결정-78 조1항단서)
재 결	구분	각하, 기각, 취소 또는 경정(77조)	각하, 기각, 취소 · 경정 · 기타 필요 처분 (81조, 65조)
	범위	불이익변경금지(훈령 15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79조)
	기간	신청,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77조)	청구받은 날로부터 90일내 (81조, 65조)
위 원 회	근거	지방세심의위원회(77조)	국세심판관회의(72조)
	성격	의결기관(77조 1항)	의결기관(78조)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 (영제58조)	국세심판원장, 상임국세심판관, 비상임국세심판관(67조2항)
	위원장	위원회에서 호선	주심국세심판관(국세심판원장 지정)
	회의 운영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 · 운영	주심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 국세심판관 2인이상 지정후 구성(72조)
	회의 공개	근거규정 없음	비공개(72조4항)

2. 조세심판원 설치에 따른 지방세구제절차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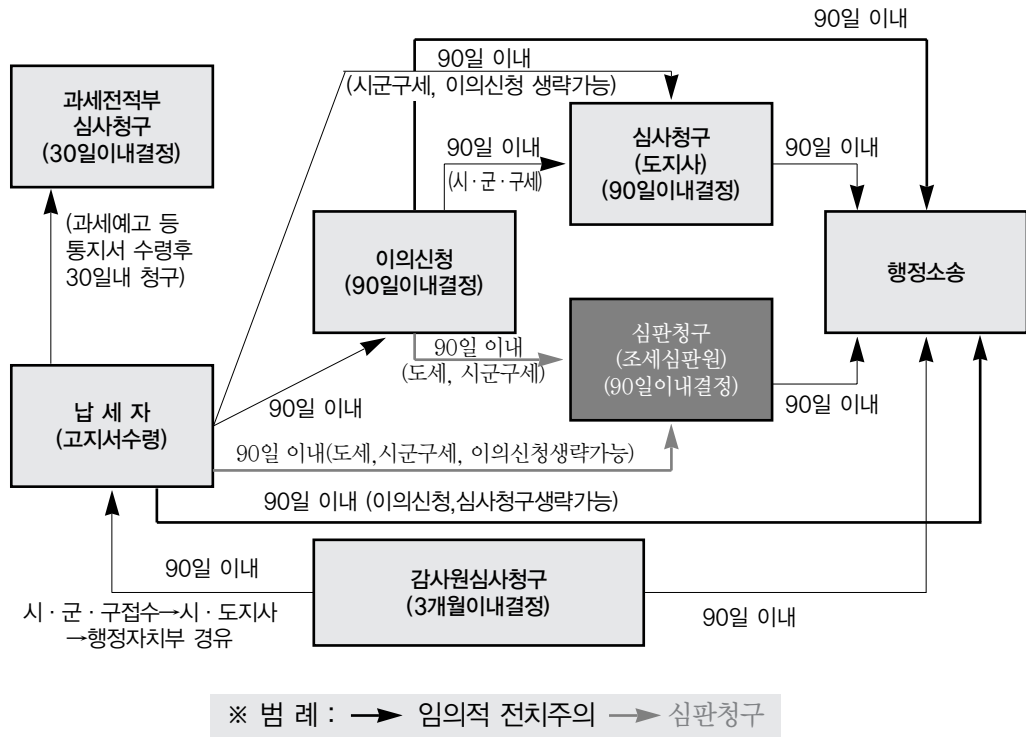
현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제도로 운영되던 지방세 불복청구 절차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시·군·구와 도에서 처리하던 이의신청제도에는 큰 변동이 없겠지만, 시·도 및 행정자치부에서 처리하던 심사청구절차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로 변경되어 지방세 구제절차상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조세심판원이 설립됨에 따라 지방세의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표7〉 지방세구제절차 흐름도(변경전)



〈표8〉 지방세구제절차 흐름도(변경후)



3. 조세심판원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

가. 지방세 심판청구의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 문제

현행 국세 심판청구는 필요적 전치주의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세 심사청구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양 기능의 통합시 지방세 심판청구의 필수적 전치주의 도입 문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 과세주체가 다르고 세목의 특수성이 있어 불복절차가 반드시 같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같은 조세를 다루는 기관에서 다른 구제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세의 경우에도 2001년 위헌판결 이전에는 국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라는 이중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였고, 필요적 전치주의가 조세처분에 의해 침해된 납세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기의 조세처분에 대하여 자기반성의 기회를 부여하여 스스로 시정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 또한 있지만, 행정심이 자기시정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할 수 있고, 행정소송 전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납세의무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임의적 전심절차 또한 장점이 있는 만큼 지방세에 있어서 임의적 전심절차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나. 조세심판에 관한 법률 통합 문제

조세심판원의 설치에 따라 현재 국세기본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산재하고 있는 조세심판에 관한 근거법령을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하여 조세심판법이라는 하나의 법률로 제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조세심판원이 설치됨에 따라 납세자의 입장에서 조세구제제도에 관한 통일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 과세주체가 다르고 세목의 특수성이 있으며, 구제절차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지방세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 및 절차 등은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지방세심판관 및 전문가 확보의 문제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권자, 세목, 과세대상, 구제절차 등이 크게 상이하므로 지방세심판관 및 지방세심판관회의를 국세의 심판관 및 심판관회의와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심판결정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국세심판관과 지방세심판관을 조세심판관으로 규정하고, 국세심판관회의와 지방세심판관회의를 조세심판관회의로 규정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지방세에 관한 심판청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조세심판관내에 최소 2명 이상의 지방세상임심판관과 조사관을 확보하고, 지방세상임심판관 및 조사관의 자격을 국세와는 별도로 규정하여 인사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V. 맺음 말

금년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조세심판원 설치됨으로 인하여 지방세 심사업무 운영에 있어 조직과 제도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조세전문가들은 조세심판원이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불복 처리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조세불복을 하는 납세자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년도는 지방세 구제업무의 숙원사업인 지방세상임심판관제도 도입, 조세심판원의 설치 등으로 지방세 구제제도의 발전에 있어 큰 획을 긋는 한해로 자리매김 하겠지만, 2008년도 지방세 심사업무의 정책방향인 지방세구제제도 체계 개선 및 구제서비스의 기능 확대 등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세 구제제도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있어 절차적 적정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게 하는 제도로써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실질적으로 담보해 나아갈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